

의안번호	제 350 호
의결년월일	1996. 5. 28. (제 44 회)

의 결 사 항	원안 가결
------------------	----------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6. 4. 27.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50
--------	--------	-----

제출연월일 : 1996. 4. 27.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사유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함.(안제11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를 그 부대 복리시설뿐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제12조제2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을 신설함.
(안제23조)
-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의 신설로 제23조(시행규칙)를 제24조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285('96. 3.25)호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과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u></p> <p>1. <u>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u></p> <p>2. <u>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및 오지종합개발사업</u></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p>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u>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u> ————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 ————— —————</p> <p>1. <u>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u></p> <p>2. <u>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u></p> <p>3.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u></p> <p>4. <u>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u></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51 368 277 399"><신설></p> <p data-bbox="151 584 680 668">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data-bbox="733 315 953 348">확세를 면제한다.</p> <p data-bbox="733 374 1257 570">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data-bbox="733 589 953 623">제24조(시행규칙) _____</p>